

인천광역시 남동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 548 호

2003 년 12 월 12 일 금요일

차 례

훈 령

-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93호(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중개정규정)---- 3

고 시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6호(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결정및지형도면고시)--- 5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7호(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실시계획인가고시)--- 6
-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8호(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)-- 11

공 고
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88호(담배소매인지정취소공고)----- 13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93호(소유시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)-- 14
-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94호(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)----- 16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 :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: 문화홍보실

훈 령

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중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

2003. 12. 12.

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193호

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중개정규정

인천광역시남동구토요일전일근무제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중 “17:00“를 ”13:00“로 한다.

제9조제2항중 “토요일전일근무제 근무자의 중식시간은 12:00부터 13:00
까지로하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대근무로 실시한다”를 “토요
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하며, 연장근무를 할 경우는 근무종료시간인
13:00이후부터 실시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
* ○ 제안이유 *
*
* · 지난 2003.11.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 형태를 개선·운영 중에 있으며, 이에 *
* 따른 토요일 당직근무 개시시간 및 중식시간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 *
*
* ○ 주요골자 *
*
* · 토요일 당직 근무자의 당직 개시시간을 13:00로 조정 *
*
* · 토요일은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함 *
*

고 시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6호

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결정및지형도면고시

1. 인천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 032-453-268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3. 12. 9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☐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☐ 도시계획시설 결정☐ 교통시설(도로)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소	3	9	3	특수 도로	760	서창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계	소1-2 호선	자전거 전용도로			일부구간 중복 (공원:12m)결정

☐ 결정도면(지형도면) : “개제생략”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7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실시계획인가고시

인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“간석1동 900-29번지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”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(☎ 453-2684) 및 교통과(☎ 453-285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03. 12. 8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의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900-29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(1) 종 류 : 도로기반시설물(공영주차장)
 - (2) 명 칭 : “간석1동 900-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”
3. 사업의 규모
 - 898.0㎡(장애인-1면, 일반인-31면)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(1) 성 명 :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
 - (2) 주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
5. 사업의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2003. 11. ~ 2004. 12.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「별첨」
7.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없음
8. 첨 부 : 관계도서(게재 생략)

지 장 물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 동명	지번	건물면적 (㎡)			층별	구조	용도	소유자		비고
			전체	편입	잔여				성명	주소	
1	간석동	900-29	12.22	12.22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이 용 식	남동구 간석동 900-29	425-9419
			79.56	79.56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		
			7.46	7.46		1층	세면벽돌, 스레트	보일러실			
			1.30	1.30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변 소			
			2.31	2.31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창 고			
			13.68	13.68		지하	세면벽돌, 스라브	보일러실, 창고			
			7.20	7.20		지하	샷 시, 스라브	창 고			
계			123.73	123.73			월조문 1식(B=2.7m), 세면벽돌담장 14.7m, 정화조 1식				
2	간석동	900-30	73.33	73.33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유 지 인	남동구 간석동 900-30	422-5467
			4.95	4.95		1층	샷 시, 스라브	주 택			
			1.40	1.40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화장실			
			2.70	2.70		1층	목 조, 스레트	건 사			
			2.42	2.42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창 고			
			13.68	13.68		지하	세면벽돌, 스라브	보일러실, 창고			
			4.95	4.95		지하	샷 시, 스라브	창 고			
계			103.43	103.43			스텐레스문 1식(B=2.8m), 세면벽돌담장 10.1m, 적벽돌담장 10.2m, 정화조 1식				

지 장 물 조 서

일련 번호	소재지		건 물 면 적 (㎡)			층 별	구 조	용 도	소 유 자		비 고
	종 영	지 번	전 체	편 입	잔 여				성 명	주 소	
3	간석동	900-31	73.33	73.33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영 종 운	남동구 간석동 900-31	425-5043
			4.95	4.95		1층	갯 시, 스라브	주 택			
			5.40	5.40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주 택			
			3.30	3.30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보일러실, 창고			
			13.68	13.68		지하	세면벽돌, 스라브	보일러실, 창고			
계			100.66	100.66			수면벽돌 1식(B=2.6m), 갯터문 1식(B=4.3m), 적벽돌담장 7.9m, 세면벽돌담장 4.7m, 정화조 1식				
4		900-32	10.29	10.29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이 소 경	남동구 간석동 900-32	425-9846
			73.97	73.97		1층	적벽돌, 스라브	주 택			
			4.14	4.14		1층	갯 시, 스라브	주 택			
			9.88	9.88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주 택			
			3.61	3.61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창 고			
			1.30	1.30		1층	세면벽돌, 스라브	화장실			
			13.68	13.68		지하	세면벽돌, 스라브	보일러실, 창고			
계			116.87	116.87			갯터문 1식(B=2.7m), 세면벽돌담장 8.7m, 정화조 1식				

서
조
물
장
지

[illegible]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3-48호

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
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액화석유가스충전업허가기준및절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2003. 12. 10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목 적

액화석유가스충전업에 따른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·육성하기 위하여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2. 허 가 기 준

- ① 액화석유가스충전업의 설치지역은 건축법, 도시계획법등 관계법상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하며, 소방법,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.
-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1,650㎡이상 확보하여야 하며, 자동차충전소는 일면이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 접하고, 관리사무실 83㎡이상(사무실, 숙직실, 수세식 화장실 포함)을 확보하여야 한다

3. 충전시설등 기준

- ①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되 자동차충전소의 저장탱크는 20톤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- ② 충전시설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용량10kW이상의 자가발전기를 확보하여야 한다.

4. 대지 및 시설등

토지 및 시설은 자기소유 또는 임대사용할 수 있다.

(다만, 임대토지는 등기를 하거나 공증된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한다)

5. 안전거리 유지

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] 제1호 가목(1)(라)의 액화석유 가스충전·저장설 비등은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를 시행규칙 [별표3] 제1호 가목(1) (가)의 표에 정한 저장 능력별 안전거리의 2배를 적용한다.

6. 위 해 방 지

액화석유가스충전업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조건부여 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7. 사업의 양도금지

사업개시 이전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.

(다만, 사망·이민·신병등 부득이한 사유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
8. 적 용 범 위

이 고시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. (다만,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등의 노후로 인하여 시설의 증설없이 변경시에 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)

부 칙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경과조치

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며,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접수되어 검토중인 허가신청서는 종전고시에 의한다.

3. 폐지

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0-27호(2000.8.12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공 고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88호

담배소매인지정취소공고

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1조제2항(지정취소공고)에 의거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공고기간 : 2003. 12. 08 ~ 12. 22(15일간)
- 공고내용 :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현황
- 공고대상 : 권순금 외 18명

순번	지정번호	상호	구분	대표자	취소일자	영업소주소	사유
1	1980-00497		일반	권순금	03-12-05	논현동 101번지	장기불매
2	1996-00886		일반	임정임	03-12-05	논현동 462번지 2호	장기불매
3	1998-02190	문환문구	일반	한미숙	03-12-05	논현동 산 69번지 7호	장기불매
4	1998-02245	신현 상화	일반	이기복	03-12-05	논현동 66번지	장기불매
5	1999-02601	공원 슈퍼	일반	최소래	03-12-05	장수동 727번지	장기불매
6	1999-02604	버스표판매소	일반	심재하	03-12-05	구월동 1121번지	장기불매
7	1999-02617	장터 쇼핑	구내	이창열	03-12-05	구월동 1268번지	장기불매
8	1999-02684	인우 마트	일반	김정선	03-12-05	만수동 109번지 15호	장기불매
9	2001-01011	부광유통	일반	황운섭	03-12-05	만수동 919번지	장기불매
10	2001-01144	동주식당	일반	곽사순	03-12-05	논현동 438번지 8호 (남동공단48블럭9롯데)	장기불매
11	2001-01245	조이마트	일반	조희전	03-12-05	논현동 563-7번지 상가107호	장기불매
12	2002-00038	뜨개질나라	일반	김미정	03-12-05	만수동 1040번지 5호 로알프라자 101호	장기불매
13	2002-00045	고바우도매뉴시	일반	강현정	03-12-05	간석동 316번지 4호	장기불매
14	2002-00177	유하	일반	유오중	03-12-05	구월동 1249번지 2호	장기불매
15	2002-00213	강서구내식당	구내	안명자	03-12-05	고잔동 308번지 8호	장기불매
16	2002-00224	에덴활인마트	일반	강존순	03-12-05	구월동 1308번지 4호	장기불매
17	2003-00033	이화부동산	일반	송나미	03-12-05	만수동 873번지 15호	장기불매
18	2003-00065	행운복권방	일반	장선희	03-12-05	구월동 1372번지 6호	장기불매
19	2003-00151		일반	이복희	03-12-05	간석동 508번지 25호	장기불매

2003. 12. 8.

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93호

소유사실확인원발급에따른관계공부열람및이의신청공고

대한주택공사 논현사업단에서 시행하는 인천논현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논현동 및 고잔동 일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사실확인원의 발급에 앞서 관계공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편입대상 물건의 지번 : 별첨
2. 편입되는 물건 및 정당권리자의 현황 : 별첨
3. 관계공부 열람장소 : 남동구청 세무과
4.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: 2003. 12. 12 ~ 2004. 1. 10(30일간)
5. 이의신청 방법 :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(2004. 1. 10일까지) 불복사유를 문서(관계서류)로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
- 주) 위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된 바대로 소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.
6. 이의신청 접수장소 : 남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☎453-2284)

2003. 12. 12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보 상 액 산 정 조 서 (지 장 물 조 서)

일련 번호	소재지	지 번	물건종류	구 조	규격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	성명	주 소	
1	논현동	산71	가옥	브릭스레트	19.20	양유석	남동구 논현동 산71	
			부엌	브릭스레트	10.35			
			화장실	브릭스레트	10.35			
			창고	목조스레트	15.05			
			가추	목조스레트	12.00			
2	논현동	산71	건사	목조철망 (철파이프)	228.42	김정인	남동구 논현동 산71	
3	논현동	305-6	가옥검점포	샌드위치판넬, 전면유리샷시	108.07	유춘성	남동구 논현동 305	
			가추	목조썸라이트	20.20			
			가옥	목조스레트	3.60			
			창고및 화장실	목조스레트	2.40			
			관정		1식			

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3-594호

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

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[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]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03.11.18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들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

2003. 12. 12.

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장
2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<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>
3. 재결 일자 : 2003. 11. 18
4. 공 고 기 간 : 2003. 12. 12 - 2003. 12. 26
5.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
 - 교부처 : 인천광역시남동구청(도시계획과)
 - 전 화 : (032)453 - 2664

6. 공시송달대상

- [소유자] - 양란희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(아)103-1305
- 김기호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(아)103-1305
- 김성호 :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11-1
- 박영순 :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93-24

[관계인] “해당없음”

7. 기 타

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